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12.10(화)14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2월 0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전시·판매 범위(안 제3조 및 제4조)

나. 판매장 관리·운영의 위탁(안 제5조)

다. 수탁자의 의무(안 제6조)

라. 사용료(안 제8조)

마. 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1조 ~ 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'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·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적절함.
- 다만,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매년 1억 5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도민들이 판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